

2020년도 제30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11. 17.(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정인,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29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847건(안건번호 제2020-152075호~15323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52075호는 클라우드에 영화 파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53230호는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이미지를 이용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이용하고 있는 민원인의 사진은 단순히 제품을 충실하게 촬영한 것으로 저작물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제품 사진은 특정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만 이용되는 것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사진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게시자가 민원인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진과 저작물성 인정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모두 삭제하여 더 이상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제품 판매자의 영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시정권고를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846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권현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30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29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현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전차 회의록 6쪽, 7쪽에 저작물명, 8쪽에 저작물명, 사이트명, 게시글 내용, 10쪽에 댓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참고로 비식별 처리해야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미리 회의록에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제2호 안건은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C 위원,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사이트명, 게시글 내용, 댓글 내용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유튜브 영상 불법성 심

의 회의 부분인 13쪽~17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전상정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 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일본 후지TV', '넷플릭스', 'Adobe Systems Inc.', 'Microsoft Corp.', 'tvN', '콘텐츠웨이브', '월트디즈니컴퍼니', 'OCN', '애니플러스'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0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847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52075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임. 민원인은 신고하면서 ○○○○ ○○○○ ○○○○

◎◎에서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링크를 공유하는 화면을 함께 제출 하였음.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보호원은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를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함.

'◆◆◆◆◆◆◆◆'에 저장된 파일에 대해 공유 링크를 생성할 수 있으며 공유 링크를 생성할 때 링크 공유명, 접속 가능 횟수, 접속 유효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심의위원회는 직접 링크 게시물을 통해 연결되는 불법복제물이 국내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때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내 서버에 저장된 원천게시물이라고 보고, 2020. 8. 14. 개최된 제2020-171 회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보여주면서)'◆◆◆◆◆◆◆◆'에 접속하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보이고 다운로드 후 영상을 볼 수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 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현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 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5207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 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A 위원: 민원인은 불법복제물이 존재하는 직접 링크 게시물을 신고했지만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불법복제물이 국내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때 시정권고의 대상은 국내 서버에 저장된 원천게시물이라고 입장을 정리했으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B 위원: 이견 없으며 시정권고 가결 의견에 동의함.
- D 위원,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5207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53230호는 민원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의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에서 판매하는 판매자가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안임. 민원인은 신고하면서 제품 판매를 위해 직접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제출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보호원에서 심의요청하기 위해 채증했을 때는 민원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의 상세페이지 이미지와 '쿠팡'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상세페이지 이미지가 동일하였으나 사무처에서 민원인 사이트 게시물과 심의대상 게시물을 비교하기 위해 확인했을 때는 제목과 메인 상품 이미지는 동일했지만 상세페이지 이미지는 다른 사진으로 변경되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해서 보여주면서)심의일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면 판매 상품 제목과 메인 이미지도 상세페이지 이미지에 맞게 변경하여 민원인의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 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헌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 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5323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 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제품 사진은 특정 제품 판매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것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사진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게시자가 민원인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진과 저작물성 인정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모두 삭제하여 더 이상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결 의견임.
- A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며 추가적으로 심의위원회는 대심제 구조가 아니어서 민원인과 게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제품 판매자의 영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함. 부결 의견임.
- B 위원, D 위원: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함. 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5323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52076호~153229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만화, 어문,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그중 일부 안건을 설명하겠음.

(게임 '전염병 주식회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게임은 2012. 5. 26. 출시되었고 디지털 패키지 게임 유통 업체인 'STEAM'에서 16,000원 판매 중인 게임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100캐시에 판매하고 있음.

(영화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영화는 2020. 10. 7.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미국 영화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350캐시에 판매하고 있음.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안건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현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심의안건 목록과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152076호~15322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A 위원,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52076호~153229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153230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152075호~153229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30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30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1. 24.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홍지만